

파주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

□ 개정이유

-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파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파주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 이사장 추천위원회 규정을 삭제하고 임원의 결격사유를 수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- 가. 이사장추천위원회 규정을 삭제함(안 제8조)
 - 파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제정
- 나. 임원의 결격사유를 변경함(안 제10조)
 - 임용당시 결격사유 해당시 당연 퇴직
 - 퇴직된 임원의 퇴직전 관여한 행위의 효력 존속

□ 검토의견

가. 법령적합성

- 동 조례개정안건은 현행 지방공기업법과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“파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” 제정으로 인해 파주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 관련 조항인 제8조(이사장추천위원회) 규정을 삭제하고, 아울러 동 조례 제10조(임원의 결격사유) 규정내용을 지방공기업법 제60조(임원의 결격사유)에 개정·규정된 내용으로 관련조항을 보완·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법령검토결과 적합성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

지방공기업법

제58조 (임원) ④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60조 (임원의 결격사유)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
1.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
2. 미성년자·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3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5.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6.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

②공사의 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.

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.

나. 내용타당성

- 동 조례의 개정조항인 제10조(임원의 결격사유)내용은 당초 5개호에 달하는 결격사유가 규정되어 있었으나, 지난 3. 25 개정된 지방공기업법 개정법 제60조(임원의 결격사유)규정에 따라 제①항에는 2호인 “금치산자, 한정치산자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”를 “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”를 분리해 6개호로 늘리고, 제②항에는 “1항의 결격사유 각호에 해당되거나 임명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직토록” 하였고, 제③항에는

“제2항의 규정에 의해 퇴직된 임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않는다”고 2개 항을 보강하였음.

- 이렇듯 관계법령과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①공단임원의 자격에 허위 또는 흠이 있는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직무중 언제라도 당연 퇴직토록 하여 준법성과 정직성을 확립하고, ②퇴직된 경우라도 퇴직전의 관여한 행위에 대한 효력을 지속시킴으로서 임원 직무중 과실책임의 중대성 여부에 따라 퇴직후에라도 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기타 내용의 타당성에 있어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.